

간행물관리규칙

제정 2016. 3. 29. 규칙 제30호

제1조 (목적) 이 규칙은 광주전남연구원(이하 “연구원”이라 한다)에서 출판하는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적용범위) 이 규칙은 연구원에서 발행하는 정기간행물, 연구보고서, 단행본 및 기타 간행물에 적용한다. 다만, 세미나 및 일반업무용 보고서에 쓰이는 유인물 등은 이 대상에서 제외한다.

제3조 (간행물심의위원회) 원장은 간행물 출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간행물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4조 (위원회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② 위원장은 원장이 되며 위원은 직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.
 ③ 원장이 유고시에는 위원 중 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을 대행한다.
 ④ 위원회 업무담당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. 간사는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.

제5조 (위원의 임기)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6조 (위원회의 직무) ① 간행물출판 여부에 관한 사항

- ② 간행물 발행부수 결정에 관한 사항
- ③ 원고감수, 편집 등에 관한 사항
- ④ 판매방법, 정가결정 등에 관한 사항
- ⑤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7조 (실비의 보상) 외부 전문가에게 원고 감수를 의뢰할 경우에는 위원회 결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.

제8조 (위원회의 소집과 의결) ①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2인 이상 위원의 발의로 소집할 수 있다.

-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가부 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.

제9조 (판권의 소유) 간행물의 판권은 연구원이 소유하며 저자 또는 타기관

및 출판사 명의로 출판, 복제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10조 (증쇄와 별쇄) 저자가 사적인 필요에 의해 비용을 담당할 경우 해당 발행사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장의 승인을 받아 증쇄 또는 별쇄할 수 있다.

제11조 (간행물배부 원칙) 연구원에서 출판하는 각종 간행물은 정가를 표시하여 유가로 배부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 배부할 수 있다.

1. 연구원 임직원
2. 광주·전남지역의회의원, 시도·시군구 자치단체장
3. 언론기관
4. 자료 교환용
5.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제12조 (간행물의 판매) 대외적인 홍보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간행물을 판매할 수 있으며 그 판매가격은 위원회에서 정한다.

제13조 (위탁판매) ① 총판 또는 서점에서 위탁판매를 요구할 경우에는 위탁 판매를 할 수 있다.

② 판매가격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.

제14조 (회원제) ① 1년 기간으로 회원제를 실시할 수 있으며 회비는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.

② 회원관리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는 연구원에서 부담한다.

제15조 (판매수입의 처리) 간행물의 판매수입은 수입당해년도 연구원 운영재원으로 충당한다.

부 칙<규칙 제30호>

이 규칙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